

## 【 8 】 양주군지방공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출년월일

2002. 7. 8

제 출 자

양 주 군 수

### 1. 폐지이유

양주군지방공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는 1990년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추진한 상수지방산업단지의 조성 및 분양을 위한 조례로서 상수지방산업단지에 관한 조성 및 분양이 완료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동조례 폐지"

양주군조례 제 호

## 양주군지방공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양주군지방공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10편 지역경제 양주군지방공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 양주군지방공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1990. 8. 3]  
[조례 제1325호]

##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력 증대 및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공업용지조성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지방공업단지 조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률에 의거 군수가 일단의 공업용지를 조성하는 지방공업단지에 적용하며, 군수가 위탁시행하는 공업단지 조성사업에도 준용한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성사업”이라 함은 공업단지내의 용지의 매입, 정지, 가로개설, 진입도로, 공업용수, 상하수시설 등의 기반조성, 사업과 전기, 통신, 환경시설등의 사업을 말하며, 단지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조성지”라 함은 제1호의 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공업용지 및 공공용지를 말한다.
3. “분양지”라 함은 조성한 단지안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건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및 그 이외의 분양대상 용지를 말한다.
4. “공장”이라 함은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 구역내에 건설하기로 결정된 공장을 말한다.
5. “부대시설”이라 함은 용수로, 도로, 하수로, 교량, 통신, 동력시설등 공업용지로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 제 2 장 사업의 시행

**제 4 조(사업의 시행자)** 공단조성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행정청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조성지의 분양은 군수가 직접 행한다.

**제 5 조(토지의 매입)** ①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은 군수 또는 이를 위탁받은 사업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

②공단조성용지의 지장물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행

## 제10편 지역경제 양주군지방공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한다.

③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국토이용관리법 및 기타 보상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6 조(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조성사업비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한다.

1. 토지의 매입비
2. 지장물등 보상비
3. 조성사업비의 공사비
4.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

제 7 조(사업비의 확보) ①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30% 범위내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도시계획법에 준하여 공단조성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자 (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내에서 당해 공단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 및 수익자 부담금의 산출기준, 수납방법 및 절차등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8 조(조성토지의 사용) 군수는 공단조성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업체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완료전이라도 입주업체가 용지사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 군수는 지방공업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지를 사용토록 할 수 있다.

## 제 3 장 공업단지 심의위원회

제 9 조(설치) 공업단지의 조성과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공업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지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단지에 입주할 기업체의 심의
3. 단지분양가격의 심의
4.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제1호의 보상업무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별도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 제10편 지역경제 양주군지방공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관한조례

제11조(구성) ①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과 위원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실과장 중에서 각각 6인 이내의 위원을 임명하고, 공업단지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4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한다.

제12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관계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 4 장 分 양

제14조(용지분양) 입주자에 분양할 용지는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용지, 지원시설용지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15조(입주자격) ①공단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다만, 공업단지의 조성 목적 또는 주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당해 공업단지의 입주 허용업종일 것.

2. 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할 것.

3. 당해 사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②지원업체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입주업체의 사업지원에 적합할 것.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할 것.

제16조(분양가격의 결정) 용지의 분양가격은 제6조 각호의 비용을 기준으로 공인평가기관의 평가가격을 참작하여 군수가 결정하되, 용지의 위치, 치형, 이용상의 편익 등 입지 여건에 따라 필지별로 분양가격을 달리 할 수 있다.

제17조(분양 절차) ①분양을 받고자 하는자는 분양신청서를 관계법령 또는

## 제10편 지역경제 양주군지방공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관한조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조성사업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면적의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

제18조(분양계약) ①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계약 체결시에는 분양대금(개산금액)의 10%를 현금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공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관리기관인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분양계약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9조(계약해제) ①군수는 제18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입한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타 납입액에 대하여는 기간중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분양대금의 납입) 조성지의 분양대금납입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업용지 조성사업 완료이전까지 일시불 또는 분할 납입도록 한다.

제21조(입주자 부담금의정산) ①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부담금은 당해 조성사업 완료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

1. 용지의 분양면적과 신청면적이 차이가 있을 때

2. 입주자 부담금 정산시 용지의 평균단가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약시 용지의 단가에 차이가 있을 때

3. 기타 확정측량등 입주자 부담금에 정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부담금의 정산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양도와 대여금지) ①분양을 받은 자는 이를 분양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②양도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환매권의 유보) 군수는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용지와

## 제10편 지역경제 영주권지 방공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지원시설용지를 분양계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권을 유보하는 조건을 부쳐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건립을 지연시키는 경우
3. 공장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4조(소유권 이전) ①군수는 공단조성이 완료되면 분양될 당해용지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 위반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전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제25조(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 ①군수는 공단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복지시설, 환경위생시설, 조경시설등 일체의 공동시설을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사용, 운영, 관리하게 하거나, 별도의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공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에게 공동시설의 유지보수비(이하 “유지보수비”라 한다)를 입주자 부담금과 같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군수는 유지보수비 부담에 관한 사항과 수납에 관한 사항을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약 체결시에 명시하여야 하며, 유지보수비의 책정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군수는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유지보수비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이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 제 5 장 보 칙

제26조(타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시계획법, 건축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재정법, 토지수용법등 공단조성 및 분양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7조(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공업단지조성 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와 구분 계리하도록 공업단지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2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조성하였거나 조성중인 공업단지에

제10면 지역경제 양주군지방공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조례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1990. 8. 3 조례 제1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양주군지방공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

### 폐지이유

양주군지방공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하조례는 1990년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추진한 상수지방산업단지의 조성 및 분양을 위한 조례로서 상수지방산업단지에 관한 조성 및 분양이 완료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동 조례 폐지”

### 폐지조례안 : 별첨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